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 업 통 상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하고, 산업통상부에 산업·자원안보 기능 강화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산업인공지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성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업인공지능 정책관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방산사업과 첨단산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정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산업통상부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석유화학 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한미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

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산업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산업성장실, 산업자원안보실 및 무역투자실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기반실·자원산업정책국”을 “산업성장실·산업자원안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1명 및 원전전략기획관 1명”을 “기획조정실장 1명”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국무회의·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6. 법령안 입안·심사 및 법령 질의·회신·자문 등 법제업무 총괄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추진

4.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5.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고도화 추진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 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평가
 11. 산업·통상·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
별·업종별 동향의 분석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3.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관리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시행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시행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시
행
 20. 산업 분야 고용·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21. 산업·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3.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 28. 녹색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 3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관리 및 감독
- 3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 3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 3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 36.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 37. 산업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 3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39.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 40.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4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 부문 전문인력 양성
- 42.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 43. 산업·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제도에 대한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4.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 45.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 46. 시·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 47.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48.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49.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50.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51.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52.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53.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54. 기업·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5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56. 시·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57. 산업단지의 관리·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58.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59. 산업단지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61.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진흥
62.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3.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 6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 66.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67.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 68.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 69. 해양플랜트 산업[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 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 70. 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71.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 72.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7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7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 75.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 76.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및 무

- 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77.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8. 디자인·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79.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0.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1.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82.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3. 방위산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시행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개선
84.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5.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86.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87. 중견기업 관련 법령·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8.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89.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90.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91.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92.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93.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4.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95.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96. 유통·기업물류의 표준화·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9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8.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99. 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100.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제13조의 제목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시행
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4.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5.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6.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관리·평가
7.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8.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9.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0. 산·학·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
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추진
1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3.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14.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15.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추진
16.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개
선
17. 부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9.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
행
20.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법령·제도의 연
구·개선
21.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
성·운영
22.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3.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확산 지원

24. 일반기계·장비 산업(연구·정보통신·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
25. 일반기계·장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26.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7.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건강 관련 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8.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9.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30.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31.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3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 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33.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4.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35.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 · 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重電器機) · 전선 · 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 ·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 · 시행
36. 전자 · 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 · 조정
37. 전자 · 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38. 전자 · 전기 산업의 산업동향 · 통계 생산 및 분석
39. 전자 · 전기 산업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40. 전자 · 전기 산업의 표준화 · 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41. 전자 · 전기 산업의 무역진흥 · 국제협력 · 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42. 전자 · 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43. 전자 · 전기 산업의 제품 · 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44. 전자 · 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45. 섬유 · 패션 · 가죽 관련 제품, 탄소 · 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

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6. 섬유·패션·가죽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48. 섬유·탄소·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및 개선

4. 자원안보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자원안보협의회 운영

5.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정보·공급망 관리

6. 자원안보위기 경보 및 비상대응 조치에 관한 사항

7. 해외 석유·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8.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확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9.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국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12. 자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3.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14.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5.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유통·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
18.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0.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1.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2.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3.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4.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5.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7.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8. 광업권 제도의 운영
29.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30.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
31.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3.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4.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5.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6.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37.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8.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9.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40.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
41.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2.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

행

- 43.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 44.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
· 평가
- 45.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운영
- 46.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 47.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48.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 49.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 50.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 51.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 52.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 5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 54.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 55.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56.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 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57.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58. 핵심 소재 · 부품 · 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 · 시행
- 59.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 60.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 · 관리
- 61.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 62. 철강 · 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 63. 세라믹 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 64. 철강 · 비철금속 · 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 6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 66. 철강 · 비철금속 · 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67.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

에 관한 사항

- 68.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
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 69.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
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 · 중간원료 · 제품 공급 안정화 정
책의 수립 · 시행
- 70.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
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71.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
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72.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
유기 · 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
· 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73.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74. 무역안보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 75.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 · 총괄
- 76.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 77.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7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 · 관리 및 정보의 조사 · 연구

7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8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운영
8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조정 및 집행
8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3.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운영
84.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운영
85.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8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8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8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0.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91.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2.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운영
9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제도의 운영

94.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5.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96.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97.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98.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99.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자유무역협정”을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 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8호까지 중 “자유무역협정”을 각각 “통상협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을 “통상협정”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및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세제·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
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조정
10. 장기·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
관리
11.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절차 등의 정비
12.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총괄
15.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제도의 운영
16.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운영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원
및 조정
18.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19.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
의 지원
20.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추진
21.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2.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3.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25. 남북 간 산업·자원 특구·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26.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27.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8.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3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33.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3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3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36.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시행

- 37.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 3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 39.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 4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 4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대응
- 4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의 통제·관리, 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 4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4.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5.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제43조제2항 후단 중 “68명”을 “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기반실”을 “산업정책실”로,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한시정원”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48조를 제49조로 하고,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한미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과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 미합중국과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3. 미합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 미합중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합중국과의 산업·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미합중국과의 산업·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④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중전의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별표 3 중 총계 “783”을 “8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73”을 “80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7”을 “29”로, 3급 또는 4급 이하 “724”를 “749”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3항 전단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별표 5]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7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통상정책국 1개 과	0명
2) 산업정책실 1개 과	7명
3) 산업성장실 1개 정책관등	1명
4) 산업성장실 1개 과	10명
5) 산업자원안보실	1명

[별표 5의2]

산업통상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8조제4항 관련)

한미통상협력과(준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4급 이하	7

[별표 6]

산업통상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9조 관련)

1. 제49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또는 5급 이하	4

2. 제4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 략) ② 산업통상부에 운영지원과 · 산업정책실 · <u>산업기반실</u> · <u>자원</u> <u>산업정책국</u>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 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 을 두고, 차관 밑에 <u>기획조정실</u> <u>장</u> 1명 및 원전전략기획관 1명 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산업성장실</u> · <u>산업</u> <u>자원안보실</u> ----- ----. ③ ----- ----- ----- <u>기획조정실</u> <u>장</u> 1명----- -----.
제9조(기획조정실) ① · ② (생 략)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 13. (생 략) 14. <u>부 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u> <u>개선에 관한 사항</u> 15. <u>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u> <u>수립 · 추진 및 조치에 대한</u> <u>평가 분석</u> 16. <u>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u> <u>· 회신 총괄</u> 17. ~ 31. (생 략)	제9조(기획조정실)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 1. ~ 13. (현행과 같음) 14. <u>국무회의 · 차관회의 안건의</u> <u>검토 및 총괄 · 조정</u> <u><삭 제></u> 16. <u>법령안 입안 · 심사 및 법령</u> <u>질의 · 회신 · 자문 등 법제업</u> <u>무 총괄</u> 17. ~ 31. (현행과 같음)

제10조(원전전략기획관) ① 원전

<삭 제>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 조직의 관리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7.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
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 ·

시행

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 ·
보수 · 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

원

9.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 ·
보수 · 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

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 ·

추진 지원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11.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 시행

12.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 · 대응

13.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 수출의 통제 · 관리,

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
자 · 다자간 국제협력

14.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
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
· 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
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추진
4.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
한 정책의 수립·시행
5.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
립·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
을 통한 산업의 혁신·고도화
추진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
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
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추진
4.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
한 정책의 수립·시행
5. 주력 산업·미래유망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
립·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
을 통한 산업의 혁신·고도화
추진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
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
안의 연계 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 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평가
11. 산업·통상·자원 등에 관
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
화 및 산업별·업종별 동향의
분석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
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3.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관
리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
의 개선 정책 수립·시행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
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
한 사항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
안의 연계 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9. 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평가
11. 산업·통상·자원 등에 관
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
화 및 산업별·업종별 동향의
분석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조
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3.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관
리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
의 개선 정책 수립·시행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
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
한 사항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

· 시행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시행

20. 산업 분야 고용·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21. 산업·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3.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

· 시행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시행

20. 산업 분야 고용·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21. 산업·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3. 산업·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시행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

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30.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31.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32.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33.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34.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3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 지원 및 관리

36.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

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관리 및 감독

3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u>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u> 37. <u>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38. <u>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39. <u>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u> 40. <u>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시행</u> 41. <u>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u> 42. <u>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관리</u> 43. <u>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인력양</u>	<u>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u> 35. <u>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u> 36. <u>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u> 37. <u>산업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u> 3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9. <u>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u> 40. <u>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u> 41. <u>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 부문 전문인력 양성</u> 42. <u>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등 온실가스</u>
---	---

성 및 기술개발 지원

44.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 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45.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 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6.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7. 섬유·패션·가죽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48. 섬유·패션·가죽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43. 산업·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제도에 대한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4.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정책의 수립·시행
45.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46. 시·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7.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48.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49.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50.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51.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52.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협력에 관한 사항

49.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50. 섬유·탄소·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51.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52.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53.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중간원료·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시행

54. 석유화학·정밀화학·불소화학·타이어·고무·플라스틱·기초유기·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

53.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54. 기업·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5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56. 시·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57. 산업단지의 관리·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

58.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59. 산업단지의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61.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진흥

62.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3.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

<u>외 협력에 관한 사항</u> 55. <u>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u> 56. <u>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 · 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57. <u>철강 · 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u> 58. <u>세라믹 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u> 59. <u>철강 · 비철금속 · 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u> 60. <u>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u> 61. <u>철강 · 비철금속 · 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u>	<u>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u> 64.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u> 65. <u>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u> 66. <u>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u> 67. <u>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u> 68. <u>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u> 69. <u>해양플랜트 산업[석유 · 가스 · 해상풍력 · 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 · 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u>
---	---

<u>협력에 관한 사항</u> 62. <u>일반기계·장비 산업(연구·정보통신·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u> 63. <u>일반기계·장비 산업(연구·정보통신·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u> 64. <u>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 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u> 65. <u>방위산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시행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개선</u> 66. <u>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진흥</u> 67. <u>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u>	70. <u>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u> 71. <u>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u> 72. <u>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u> 73. <u>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u> 74. <u>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u> 75. <u>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u> 76. <u>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u>
---	--

68.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70.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7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2.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73.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74. 해양플랜트 산업[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

교류 등 국제협력

77.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78. 디자인·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79.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0.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1.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82.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3. 방위산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시행과 민·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개선

84.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5.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립·시행

75. 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76.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7.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8.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9.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86.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87. 중견기업 관련 법령·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8. 산업정책과 중견·중소·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89.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90.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91.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92.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93.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4.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건전성 지원

95.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

96. 유통·기업물류의 표준화·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9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u>중전기(重電器機) · 전선 · 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80. <u>전자·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u> 81. <u>전자·전기 산업의 기술융합</u> 82. <u>전자·전기 산업의 산업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u> 83. <u>전자·전기 산업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u> 84. <u>전자·전기 산업의 표준화 · 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u> 85. <u>전자·전기 산업의 무역진흥 · 국제협력 · 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u> 86. <u>전자·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u> 87. <u>전자·전기 산업의 제품 · 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u> 88. <u>전자·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u>	98. <u>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u> 99. <u>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u> 100. <u>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u>
--	--

원

89.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
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
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0.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
도의 연구·개선
91.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92.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
제협력
93.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
(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
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사
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94.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
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
성
95.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
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

교류 등 국제협력

96.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
립·시행

97. 디자인·브랜드 산업의 육
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
행

98.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9.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
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
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
한 사항

100.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01.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02.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
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103.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
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04.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
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
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

영·관리 및 감독

105.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106.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107.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108.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109.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110. 산업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11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산업

<u>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u> <u>112.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u> <u>113.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u> <u>114.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통상 부문 전문인력 양성</u> <u>115.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u> <u>116. 산업·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제도에 대한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제13조(산업기반실) ① <u>산업기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u> ② (생략) ③ <u>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 정책의 수립·시행</u> <u>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u> <u>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u>	제13조(산업성장실) ① <u>산업성장실-----</u>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 정책의 수립·시행</u> <u>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u> <u>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u>
---	--

수립·시행

4. 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5.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6.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7.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관리·평가
8.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추진
9.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
10.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 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1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3. 산·학·연 협력 등 산업기

수립·시행

4.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5.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6.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관리·평가
7.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 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8.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9.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0. 산·학·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추진
1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3.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

<u>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u> <u>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추진</u> 14. <u>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시행</u> 15. <u>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활용·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u> 16. <u>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u> 17. <u>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18. <u>제조업 등에 대한 산업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u> 19. <u>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u> 20. <u>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u> 21. <u>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u> 22. <u>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u> 23. <u>시·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u>	<u>발 지원</u> 14. <u>산업 융·복합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u> 15. <u>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추진</u> 16. <u>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u> 17. <u>부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18. <u>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u> 19. <u>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 20. <u>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u> 21. <u>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운영</u> 22. <u>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u>
---	---

경제·산업동향 분석·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력
2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23.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확산 지원
25.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원	24. 일반기계·장비 산업(연구·정보통신·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
26.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25. 일반기계·장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26.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28.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27.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건강 관련 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29.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28. 바이오·융복합 의료기기·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0.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29.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
31. 기업·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33. 시·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추진	
34. 산업단지의 관리·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	

책 · 계획의 수립 · 시행

35.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36. 산업단지의 재난 ·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37.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38.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39. 중견기업 관련 법령 ·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0. 산업정책과 중견 · 중소 · 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41.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42.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43.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4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45.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 · 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6.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도의 연구 · 개선

30.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31.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3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관,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33.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4.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35.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 · 개인용 컴퓨터

<u>건전성 지원</u> <u>47.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시행</u> <u>48. 유통·기업물류의 표준화·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u> <u>49.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u> <u>50.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u>	<u>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시행</u> <u>36. 전자·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u> <u>37. 전자·전기 산업의 기술융합</u> <u>38. 전자·전기 산업의 산업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u> <u>39. 전자·전기 산업 인력양성·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u> <u>40. 전자·전기 산업의 표준화·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u> <u>41. 전자·전기 산업의 무역진흥·국제협력·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u>
--	---

	<u>42. 전자·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u> <u>43. 전자·전기 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u> <u>44. 전자·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u> <u>45. 섬유·패션·가죽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u> <u>46. 섬유·패션·가죽 관련 제품, 탄소·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u> <u>4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u> <u>48. 섬유·탄소·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u>
<u>제14조(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u>	<u>제14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고,</u>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4. 해외 석유·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5.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확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6.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 차세대 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8. 국내외 석유·가스 및 광물 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및 개선

4. 자원안보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조정 및 자원안보 협의회 운영

5.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정보·공급망 관리

6. 자원안보위기 경보 및 비상대응 조치에 관한 사항

7. 해외 석유·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8. 석유·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확정 및 주변국

9. 자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0.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11.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유통·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4.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

1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17.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8.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9.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0. 국내 지질자원 조사·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1. 국내외 석유·가스 및 광물 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유통

12. 자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3.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14.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5.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유통·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7.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

18.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1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
의 수립·추진

21.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
원 확충

22.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3.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4.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25. 광업권 제도의 운영

26.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27.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
력 지원

28.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
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
항

29.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
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조
정

30.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
의 운영

31.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의 유통·품질관리 및 기술개
발 등에 관한 사항

1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20.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
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
행

21.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2.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3.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
의 수립·추진

24.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
원 확충

25.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7.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28. 광업권 제도의 운영

29.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30.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
력 지원

32.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3.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34.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5.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6.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37.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

38.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9.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0.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41.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31.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 상정 안전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3.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4.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5.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6.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37.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8.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39.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40.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시행

41.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지

42.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운영

43.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원에 관한 사항

42.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3.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안전기기의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44.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평가

45.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제도 운영

46. 석유·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47.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8.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49.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50.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51.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2.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5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 지원 및 관리

54.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55.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6.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7.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8.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

도의 수립 · 시행

59.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60.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 · 관리
61.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62. 철강 · 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 · 시행
63. 세라믹 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시행
64. 철강 · 비철금속 · 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6. 철강 · 비철금속 · 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7.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

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68.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
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
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
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 · 시
행

69.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
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
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 · 중간원료 · 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 · 시
행

70.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
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
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
외 협력에 관한 사항

71.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
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
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
로의 전환 촉진

72. 석유화학 · 정밀화학 · 불소

화학 · 타이어 · 고무 · 플라스
틱 · 기초유기 · 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
정 및 수요기업 · 공급기업 지
원에 관한 사항

73.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
립 및 추진

74. 무역안보 관련 법령 · 제도
의 운영

75.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
· 총괄

76.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에 관한 사항

77.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
성에 관한 사항

7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
· 관리 및 정보의 조사 · 연구

7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
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 · 지
원 및 조정

8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
회의 운영

8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
· 조정 및 집행

8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3.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운영

84.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운영

85.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8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8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8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0.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91.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2.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u>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u> <u>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운</u> <u>영</u>
	93. 「 <u>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u> <u>보호에 관한 법률</u> 」 등 관계 <u>법령·제도의 운영</u>
	94. <u>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u> <u>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u> <u>진</u>
	95. <u>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u> <u>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u> <u>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u>
	96. <u>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u> <u>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u> <u>협력</u>
	97. <u>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u> <u>및 국가 간 협력</u>
	98. <u>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u> <u>화 및 국가 간 협력</u>
	99. <u>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u> <u>행에 필요한 사항</u>
제18조(통상교섭실) ①·② (생략)	제18조(통상교섭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u>자유무역협정의 체결과 관련</u>	1. <u>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u>

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u>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u> -----
2. <u>자유무역협정</u>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2. <u>통상협정</u> ----- ----- -----
3. <u>자유무역협정</u> 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3. <u>통상협정</u> ----- ----- --
4. <u>자유무역협정</u> 의 비준에 관한 업무	4. <u>통상협정</u> ----- ---
5. <u>자유무역협정</u> 과 관련된 법적 검토	5. <u>통상협정</u> ----- ---
6. <u>자유무역협정</u> 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6. <u>통상협정</u> ----- -----
7. <u>자유무역협정</u> 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7. <u>통상협정</u>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9. <u>자유무역협정</u> 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9. <u>통상협정</u> ----- -----
10. <u>자유무역협정</u> 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0. <u>통상협정</u> ----- -----
11. <u>자유무역협정</u> 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1. <u>통상협정</u> ----- -----
12. <u>자유무역협정</u> 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	12. <u>통상협정</u> ----- -----

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 -----
13. <u>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 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u>	13. <u>통상협정</u> ----- -----
14. <u>자유무역협정의 정부조달· 지식재산권·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u>	14. <u>통상협정</u> ----- ----- ----- --
15. <u>자유무역협정의 환경·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u>	15. <u>통상협정</u> ----- -----
16. <u>자유무역협정의 그 밖의 분 야 교섭에 관한 업무</u>	16. <u>통상협정</u> ----- -----
17. <u>자유무역협정</u> 각 분야 업무 와 관련된 조사·연구	17. <u>통상협정</u> ----- -----
18. 그 밖에 <u>자유무역협정</u> 과 관 련된 사항	18. ----- <u>통상협정</u> ----- -----
19.·20. (생략)	19.·20. (현행과 같음)
21. <u>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 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 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시행</u>	21. <u>통상협정</u> ----- ----- ----- -----
22. ~ 40. (생략)	22. ~ 40. (현행과 같음)
제19조(무역투자실) ①·② (생 략)	제19조(무역투자실)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u>	③ <u>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u>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 · 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 · 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 · 세제 · 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 · 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 · 조정
10. 장기 · 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 · 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 · 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 · 세제 · 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 · 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 · 조정
10. 장기 · 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 · 관리

11.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 절차 등의 정비
12.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3.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 · 총괄
15.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 · 제도의 운영
16.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 · 운영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 · 지원 및 조정
18.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 활동 지원
19.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0.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 · 추진
21.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가공 · 관리

11.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 절차 등의 정비
12.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시행
13.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 · 총괄
15.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 · 제도의 운영
16.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 · 운영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 · 지원 및 조정
18.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 활동 지원
19.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0.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 · 추진
21.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2.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
원

23.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
조 및 지원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25. 남북 간 산업·자원 특구·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26.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
담대책 수립

27.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8.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
축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
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다
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0.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
립 및 추진

31. 무역안보 관련 법령·제도
의 운영

32.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
·총괄

지원

22.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
원

23.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
조 및 지원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25. 남북 간 산업·자원 특구·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26. 남북 간 산업·자원 분야 회
담대책 수립

27.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8.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
축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
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다
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3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3.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
에 관한 사항

34.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
성에 관한 사항

35.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
· 관리 및 정보의 조사·연구

36.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
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지
원 및 조정

37.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
회의 운영

38.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
· 조정 및 집행

39.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
진

40.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
도 기획·운영

41.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
획·운영

42.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43.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44.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3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33.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
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
출 지원

34.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
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
조직의 관리

3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36.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
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
시행

37.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
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
원

3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
보수·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
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
추진 지원

39.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45.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46. 「대외무역법」 제22조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7.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48.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
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49.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
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운
영

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제도의 운영

51.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
진

52. 국가핵심기술·전략기술·
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4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4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대응

4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의 통제·관리,
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
자·다자간 국제협력

4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4.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
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
·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53.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54.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55.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
화 및 국가 간 협력

56.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
행에 필요한 사항

제43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
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8명을, 3
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
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
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
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
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

제43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72명-----

-----.

③ ----- 산

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0장 한시 정원

업 정책 실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 설>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 산업
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
협력과를 둔다.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
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
다.

③ 한미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과의 산업·자원협
력에 관한 사항

2. 미합중국과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3. 미합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 미합중국에 대한 투자의 지
원에 관한 사항

5. 미합중국과의 산업·자원협
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
성·운영에 관한 사항

6. 미합중국과의 산업·자원분
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

제48조(한시정원)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신 설>	업 발굴·추진 지원 ④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한시정원) ① ----- ----- ----- ----- 2027 년 12월 31일----- ----- --.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부 공무원 정원표(제4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3</u>	<u>810</u>	+27
•	•	•	
•	•	•	
일반직 계	<u>773</u>	<u>800</u>	+27
고위공무원단	<u>27</u>	<u>29</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24</u>	<u>749</u>	+25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